

202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모집공고일 : 2026년 8월 20일(목)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 (선순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소득·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26.08.20. (목)	'26.08.31.(월) ~ '26.09.03.(목)	'26.10.12. (월)	'26.10.21.(수) ~ '26.10.23.(금)	대상자 별도 통보	'27.02.15. (월)	'27.03.03.(수) ~ '27.03.05.(금)

■ 자치구별 방문청약일자

2026.09.01.(화)	[강동구, 송파구 내 단지]
2026.09.02.(수)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내 단지]
2026.09.03.(목)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의정부시 내 단지]



스마트 주택안내 센터

[모바일 원본 보기]

202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휴대폰으로 찰칵!
바로 확인하세요



[내 집, 똑똑하게 찾기]

딱 맞는 주택을
진단해 드릴게요!
(자가진단 서비스)

[주택정보, 한눈에]

SH공사 임대주택
총정리
(종합정보안내)



[영상으로 배우기]

알기 쉬운
청약이야기
(청약 가이드 영상)

[나의 당첨 가능성은?]

전년도 당첨
합격선
(컷라인 안내)



[소식, 놓치지 마세요]

SH공사의
새로운 소식들!
(공식채널)

[같이 개선해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만족도 조사)



차 례

1. 공급일정	9
2. 신청관련 문의	10
3. 공급대상	11
4. 신청자격	22
5. 입주자 선정	26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33
7. 신청접수 일정	36
8. 신청접수 안내	37
9.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안내	40
10. 심사서류 제출안내	41
11.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45
12.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46
13. 유의사항	47
14. 단지별 상세주소 안내	49
15. 단지별 유의사항	53
[별표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59
[별표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60

202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이번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모바일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인터넷/모바일 신청시 개인용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11종) 중 1개가 필요하오니, 반드시 접수일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모바일 접수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신청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장시간(5시간 이상)의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방문접수가 마감될 수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청약 방법】

- 인터넷/모바일 청약기간 : 2026.08.31.(월) 10:00 ~ 2026.09.03.(목) 17:00
- 청약방법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청약접수 (www.i-sh.co.kr/app)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11종) 중 1개로 청약 가능, PC 및 모바일 이용]

【방문접수 방법】

- 방문접수 기간 : 2026.09.01.(화) ~ 2026.09.03.(목) 10:00 ~ 17:00

2026.09.01.(화) : [강동구, 송파구 내 단지]

2026.09.02.(수) :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내 단지]

2026.09.03.(목) :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의정부시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구비서류 : 1)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방문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선순위에 한하여 접수받습니다.

- 방문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는 접수 방식이며, 청약 신청 인원이 과도하게 몰리기 때문에 청약과 관련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신청주택을 미리 결정하시고, 청약관련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가져오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 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등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서울시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가능

- 신청 접수 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주택형·가점사항 등 본인이 기재한 내역에 대해 일체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 장내 혼잡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격

[선순위 조건]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1인 90%, 2인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출생자녀 소득 및 자산 요건 가산 적용

- 공급신청자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이 적용됩니다.

※ 출생자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출생자녀를 의미하며, 손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3년 3월 28일		가산비율
기준일 이후(당일 포함) 출생 자녀수(태아 포함)	기준일 전 출생 자녀수 (미성년자)	
1명	0명	10%p
1명	1명 이상	20%p
2명 이상	상관없음	20%p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인정 받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출생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을 한 경우 또는 파양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출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등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산 ·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진단서

- 입양의 경우: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이 시작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공고문 24~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 등)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이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한 '2021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1.09.24.)' 또는 '2022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2.05.20.)', '2023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2023.06.23.)', '2024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2024.09.26.)', '2025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2025.08.20.)'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이번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이전 순번은 자동으로 삭제처리 됩니다.
-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은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주체(LH, GH 등)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이번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3. 공급대상, 11~15쪽)**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됩니다.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철거민 등 특별공급 신청자가 있거나 긴급 주거이동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이번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에 따라 동일 임대주택 유형에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6.08.20.(목)**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입주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을 잘못 입력하거나 잘못 기재 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공고일 이후 영업일('26.08.21.) 부터 발급됨.]

※ 가입은행을 잘못 입력하여 걸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가입은행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26-000379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아래 접수일정 또는 공고문 신청접수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에 대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상담이 진행되므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청약가입은행 오기재, 중복신청, 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상담내용,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또는 청약 신청 시 인적사항(주소·연락처 등)을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류제출 안내, 소명 관련 안내 및 계약 관련 안내 등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에는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하거나(개인 정보 변경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서 주소, 연락처를 직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14일 전인 2027.02.01. 00:00까지 수정 가능

인적사항 오기재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 또는 수정하지 아니하여 서류 미제출, 소명 미응답, 계약 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 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연락처 변경 방법

☞ 홈페이지(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정보 - 청약신청관리 - (주택임대)주소·연락처 변경 및 청약 철회 신청 메뉴에서 변경(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필요)

1.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신청 접수기간 (선순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소득·자산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26.08.20. (목)	'26.08.31.(월) ~ '26.09.03.(목)	'26.10.12. (월)	'26.10.21.(수) ~ '26.10.23.(금)	대상자 별도 통보	'27.02.15. (월)	'27.03.03.(수) ~ '27.03.05.(금)

* 방문접수는 09.01(화), 09.02(수), 09.03(목) 3일간에 한함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접수방법
○ 공급(일반, 주거약자) <u>선순위</u> 자격대상자	2026.08.31.(월) 10:00 ~ 2026.09.03.(목) 17:00	인터넷청약 : www.i-sh.co.kr/app
- 50㎡미만(29㎡, 39㎡, 46㎡,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 50㎡이상 60㎡이하(5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026.09.01.(화) ~ 2026.09.03.(목) 3일간 10:00~17:00	방문청약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 공급(일반, 주거약자) <u>후순위</u> 자격대상자	2026.09.16.(수) 10:00 ~ 17:00	인터넷청약 : www.i-sh.co.kr/app
- 50㎡미만(29㎡, 39㎡, 46㎡,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 50㎡이상 60㎡이하(5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1인의 경 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미가입자 포함)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09.01.(화) : [강동구, 송파구 내 단지]

2026.09.02.(수) :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내 단지]

2026.09.03.(목) :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의정부시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신청관련 문의

○ 대표전화, 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00~13:00)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콜센터 ARS 조회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청약 신청으로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자세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가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정확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청약 마감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사항을 변경할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공급하는 단지의 위치, 평형 등에 대한 정보는 전자책[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 단지 정보 검색 방법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청약정보 → 단지별 임대정보 → SH주택정보 사이트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3. 공급대상

■ 임대대상 및 금액 [재공급 단지]

자치구	연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합계					1,973	409	1,564									
강남구	1	세곡2지구3단지 ·레미안포레	49	일반	4		4	2	54,800	10,960	43,840	384,200	49.94	20.49	30.52	100.95
				주거약자	2		2	2								
	2	세곡2지구4단지 ·강남한양수자인	49	일반	7	1	6	1	56,420	11,284	45,136	394,100	49.94	17.78	32.09	99.81
				주거약자	4		4									
			59	일반	7	1	6	10	66,560	13,312	53,248	443,200	59.93	21.62	38.52	120.07
				주거약자	2		2	2								
	3	세곡2지구6단지 ·강남한신휴플러스 6단지	39	일반	2		2	2	41,590	8,318	33,272	303,000	39.86	17.24	28.80	85.90
				주거약자	2		2	2								
			49	일반	2		2	1	63,910	12,782	51,128	407,400	49.79	21.29	35.98	107.06
	4	세곡2지구8단지 ·강남한신휴플러스 8단지	59	일반	2		2	2	98,440	19,688	78,752	514,700	59.97	23.18	53.55	136.70
	5	세곡지구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2단지 ·세곡리엔파크 3,4단지 ·강남데시앙파크	39	일반	7	1	6		30,890	6,178	24,712	261,900	39.95	18.37	32.31	90.63
				주거약자	10	2	8		32,820	6,564	26,256	277,900				
			49	일반	19	7	12		46,140	9,228	36,912	342,000	49.74	22.76	40.24	112.74
				주거약자	6		6	2	49,800	9,960	39,840	367,900				
			59	일반	32	20	12	14	54,680	10,936	43,744	387,500	59.97	17.44	37.78	115.19
				주거약자	5		5	4	59,590	11,918	47,672	406,900				
강동구	6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리버파크 1~10단지	39	일반	63	27	36		30,520	6,104	24,416	237,400	39.64	19.70	20.93	80.27
				주거약자	17	7	10									
			49	일반	61	21	40		41,570	8,314	33,256	275,600	49.82	23.48	25.12	98.42
				주거약자	6		6									
			59	일반	81	31	50		49,800	9,960	39,840	321,200	59.70	23.05	31.52	114.27
				주거약자	5		5	4	64,150	12,830	51,320	370,100				

자치구	연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강동구	7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 1~3단지	49	일반	30		30	8	43,810	8,762	35,048	313,600	49.89	17.18	28.10	95.17		
				주거약자	4		4	4	44,420	8,884	35,536	324,000						
			59	일반	62	2	60	12	51,570	10,314	41,256	355,300	59.72	20.43	33.63	113.78		
				주거약자	8	2	6		52,380	10,476	41,904	363,800						
	8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 4,6,7,8단지	29	일반	44	7	37		18,500	3,700	14,800	182,200	29.27	13.55	21.32	64.14		
				주거약자	2		2	2	19,210	3,842	15,368	190,600						
			39	일반	34	6	28		35,890	7,178	28,712	251,500	39.41	18.00	28.71	86.12		
				주거약자	6	1	5		37,050	7,410	29,640	264,100						
			49	일반	26	5	21		54,420	10,884	43,536	330,100	49.25	21.86	32.18	103.29		
				주거약자	4		4	2	54,620	10,924	43,696	333,100						
			9	고덕강일3지구 ·강동리엔파크 9, 14단지	29	일반	21	5	16		18,470	3,694	14,776	180,000	29.03	14.36	18.65	62.04
						주거약자	5	1	4		20,610	4,122	16,488	202,400				
	39	일반			11	5	6		35,570	7,114	28,456	249,700	39.10	18.42	25.13	82.65		
		주거약자			4		4		39,350	7,870	31,480	273,100						
	49	일반			11	3	8		54,310	10,862	43,448	328,700	49.67	22.73	31.91	104.31		
	10	고덕강일지구 13단지	39	일반	18	6	12		37,490	7,498	29,992	265,800	39.81	17.50	31.29	88.61		
			49	일반	7	3	4		54,880	10,976	43,904	333,500	49.66	20.99	39.04	109.69		
	11	고덕온빛채	49	일반	20	8	12		60,280	12,056	48,224	385,600	49.54	22.78	45.00	117.32		
강서구	12	마곡지구 ·마곡엠밸리 1~15단지 (9단지 제외)	49	주거약자	6		6	3	55,640 64,670	11,128 12,934	44,512 51,736	379,800 420,600	49.77	21.36	41.92	113.05		
			59	주거약자	4		4	2	57,700 75,250	11,540 15,050	46,160 60,200	376,400 464,500	59.79	25.55	50.36	135.70		
	13	마곡지구 9단지 ·마곡엠밸리 9단지	49	주거약자	2		2	2	57,990	11,598	46,392	319,300	49.53	20.10	39.19	108.82		
	14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 1~7단지	59	일반	40		40		40,020 43,230	8,004 8,646	32,016 34,584	293,200 321,700	59.76	17.26	23.43	100.45		
구로구	15	천왕지구 ·천왕이펜하우스 1~6단지	39	일반	4		4	5	28,750	5,750	23,000	249,700	39.45	18.87	31.57	89.89		
				주거약자	2		2	3	35,480	7,096	28,384	287,100						
			49	일반	48	8	40		43,710	8,742	34,968	325,400	49.58	23.92	34.20	107.70		
				주거약자	10	2	8		49,120	9,824	39,296	349,800						
			59	일반	62	22	40		51,900	10,380	41,520	366,600	59.95	25.13	47.97	133.05		
				주거약자	4		4	1	59,930	11,986	47,944	394,100						

자치구	연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구로구	16	천왕2지구 ·천왕연지타운 1,2단지	39	일반	9		9		41,540	8,308	33,232	293,000	39.97	16.68	33.06	89.71
				주거약자	3		3	2								
			49	일반	24		24		54,390	10,878	43,512	346,500	49.34	20.29	40.79	110.42
				주거약자	2		2	3	61,900	12,380	49,520	372,700				
	17	향동지구 ·향동하버라인 2,3,4,8단지	59	일반	36	2	34		65,140	13,028	52,112	395,800	59.86	19.93	39.94	119.73
				주거약자	3		3	2	76,450	15,290	61,160	446,700				
			39	일반	35	7	28		34,430	6,886	27,544	253,700	39.91	18.18	28.66	86.75
				주거약자	2		2	2	37,890	7,578	30,312	270,100				
노원구	18	상계보금자리지구 ·중계센트럴파크	49	주거약자	2		2	3	63,850	12,770	51,080	377,200	49.49	22.01	32.96	104.46
	19	상계장암지구(3,4단지) ·수락리버시티3,4단지	39	일반	20	8	12		29,680	5,936	23,744	232,100	39.81	12.73	18.37	70.91
마포구	20	상암2지구 ·상암월드컵파크 9~12단지	39	주거약자	3		3	3	32,200	6,440	25,760	256,500	39.33	14.25	24.27	77.85
			49	주거약자	8		8	1	47,400 54,340	9,480 10,868	37,920 43,472	328,300 337,800	49.58	18.07	27.26	94.91
			59	일반	15		15		57,020	11,404	45,616	378,100	59.37	22.22	32.66	114.25
				주거약자	8		8	2	65,090	13,018	52,072	386,000				
서초구	21	내곡지구 ·서초포레스타 2, 6단지	39	일반	10		10		35,060	7,012	28,048	301,600	39.37	18.55	31.21	89.13
				주거약자	3		3	2								
			49	일반	40		40	2	53,090	10,618	42,472	391,900	49.33	23.40	39.10	111.83
				주거약자	3		3	2	66,240	13,248	52,992	426,100				
	22	우면2지구 다세대주택 ·네이처힐가든	46	일반	2		2	2	64,600	12,920	51,680	381,800	46.92	18.69	37.13	102.74
	23	우면2지구 ·서초네이처힐 2~7단지	39	일반	18		18	1	30,700 41,490	6,140 8,298	24,560 33,192	254,700 279,400	39.79	13.96	24.29	78.04
			49	일반	40		40	13	44,120 52,600	8,824 10,520	35,296 42,080	311,700 352,400	49.90	15.22	27.10	92.22
			59	일반	65		65	13	52,450 72,610	10,490 14,522	41,960 58,088	353,900 405,400	59.99	18.73	44.01	122.73

자치구	연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성동구	24	마장동 임대아파트 ·마장동 에스에이치빌	39	일반	10		10	1	20,880	4,176	16,704	267,000	39.84	17.38	28.13	85.35
			49	일반	4		4	3	32,660	6,532	26,128	329,000	49.95	21.28	35.27	106.50
성북구	25	장월1 ·장월 에스에이치빌 1단지	39	일반	4		4	2	14,490	2,898	11,592	218,300	39.34	14.06	29.81	83.21
송파구	26	마천지구 ·송파파크데일 1,2단지	39	일반	4		4	10	30,790	6,158	24,632	248,800	39.96	12.37	21.74	74.07
				주거약자	2		2	1	31,710	6,342	25,368	255,000				
			49	일반	15		15	2	45,160	9,032	36,128	319,700	49.60	16.24	30.07	95.91
				주거약자	3		3	2	46,360	9,272	37,088	326,600				
			59	일반	16		16	1	53,650	10,730	42,920	361,200	59.91	18.71	32.59	111.21
				주거약자	3		3	2	55,760	11,152	44,608	375,000				
	27	오금지구 ·송파레미니스 1,2단지	39	일반	29	4	25		38,570	7,714	30,856	246,500	39.47	18.68	27.20	85.35
				주거약자	3		3	1	38,650	7,730	30,920	255,900				
			49	일반	11	1	10		58,090	11,618	46,472	325,700	49.31	23.53	27.22	100.06
				주거약자	2		2	2								
			59	일반	6		6	3	71,520	14,304	57,216	398,300	59.85	28.46	33.03	121.34
				주거약자												
	28	위례포레샤인 13단지	39	일반	14	4	10		42,580	8,516	34,064	271,900	39.76	18.34	32.49	90.59
				주거약자	2		2	2								
			59	주거약자	2		2	2	75,350	15,070	60,280	403,000	59.31	26.81	48.46	134.58
	29	위례포레샤인 23단지	39	일반	28	1	27		42,610	8,522	34,088	260,700	39.79	18.47	27.70	85.96
				주거약자	3		3	4								
			49	일반	45	7	38		63,670	12,734	50,936	332,500	49.48	22.05	34.46	105.99
				주거약자	3		3	3								
	30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 2~11단지	39	일반	42	7	35		28,600 29,610	5,720 5,922	22,880 23,688	240,500 245,700	39.99	16.08	27.91	83.98
			49	일반	57	25	32		39,070 47,150	7,814 9,430	31,256 37,720	276,000 302,500	49.77	17.33	28.24	95.34
			59	일반	59	30	29		49,580 61,070	9,916 12,214	39,664 48,856	335,000 369,400	59.67	17.61	27.91	105.19
양천구	31	신정3지구 ·신정이편하우스 1~5단지	49	주거약자	9	3	6		40,070 49,870	8,014 9,974	32,056 39,896	303,800 350,800	49.92	14.85	30.84	95.61
				일반	58	14	44		47,150 58,640	9,430 11,728	37,720 46,912	344,000 394,100				
			59	주거약자	4		4	1					59.83	18.38	36.96	115.17

자치구	연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공급 구분	모집세대수			기존 대기중 예비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세대별 계약면적 (㎡)			
					합계 (A+B)	공가 입주자 (A)	금회 공급할 예비 입주자 (B)		계	계약금 (계약시 20%)	잔금 (입주시 8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양천구	32	신정4지구 ·신정숲속마을	39	일반	4		4	2	28,320	5,664	22,656	236,600	39.92	19.75	23.86	83.53
				주거약자	2		2	1								
은평구	33	은평1지구 ·상림마을6-1~ ·상림마을8-3단지	39	일반	43	13	30		29,840	5,968	23,872	219,000	39.83	17.39	21.68	78.90
			49	일반	34	12	22		45,920	9,184	36,736	275,300	49.32	21.53	26.84	97.69
			59	일반	78	42	36		62,060 79,880	12,412 15,976	49,648 63,904	376,500 457,300	59.80	19.93	34.61	114.34
	34	은평2지구 ·박석고개 1-1,1-3단지 ·마고정 3-1~3-3단지 ·우물골 2-1,2-2단지	39	일반	14		14	2	29,140 30,040	5,828 6,008	23,312 24,032	220,300 226,400	39.18	11.06	18.84	69.08
			49	일반	6		6	1	44,840 46,190	8,968 9,238	35,872 36,952	276,800 299,600	49.74	16.64	28.49	94.88
			59	일반	36	12	24		57,960 69,350	11,592 13,870	46,368 55,480	370,300 418,500	59.36	15.71	24.23	99.30
	35	은평3지구 ·구파발9-1단지 ·구파발10-2단지 ·구파발10-3단지	39	일반	10		10	2	30,930 32,220	6,186 6,444	24,744 25,776	222,700 248,300	39.92	11.44	17.98	69.34
			49	일반	2		2	1	47,430	9,486	37,944	319,200	49.89	13.86	22.47	86.22
			59	일반	28	3	25		56,190 61,390	11,238 12,278	44,952 49,112	360,300 378,000	59.86	17.00	26.96	103.82
중랑구	36	신내데시앙	59	주거약자	8	2	6	1	50,800	10,160	40,640	326,500	59.70	20.50	23.04	103.24
	37	신내3지구 ·신내우디안1단지 ·신내데시앙포레	49	주거약자	8	2	6		48,590 49,440	9,718 9,888	38,872 39,552	336,300 350,200	49.51	21.05	30.12	100.68
			59	주거약자	4		4	2	58,540 58,860	11,708 11,772	46,832 47,088	386,900 399,300	59.46	25.31	36.16	120.93
의정부시	38	상계장암지구(1,2단지) ·수락리버시티 1,2단지	39	일반	5		5		27,180	5,436	21,744	212,400	39.81	13.46	17.63	70.90

※ 기존 대기중 예비자 : 2021년 1차, 2022년 1차, 2023년 1차, 2024년 1차, 2025년 1차 국민임대 예비자로 해당 예비자 순번의 다음 번호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본 모집공고 공급단지들의 입주시작 예정월은 2027년 3월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고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공급단지 중 재공급단지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가를 재공급하는 것입니다.

○ 공가 입주자는 본 공고 일정에 따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며, 예비입주자의 경우 즉시 입주가 아닌 다음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퇴거, 당첨세대의 미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를 예비순번대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급 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방 개수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지구 또는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동일단지 내 동일한 신청 유형의 임대가격은 동일합니다. 단, 복층이 혼재되어있는 단지(은평1지구, 마곡지구 등)의 경우 별도 가격이 적용될 수 있으며 무작위 전산추첨에 따라 해당 세대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구분 없이 지구별, 전용면적 별로 신청 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단지 및 동호가 결정됩니다. 배정된 단지에 따라 상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지구단위 공급 단지: 세곡지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마곡지구, 발산지구,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상암2지구, 내곡지구, 우면2지구, 마천지구, 오금지구, 장지지구, 신정3지구, 은평1·2·3지구, 신내3지구, 상계장암지구(1,2단지), 상계장암지구(3,4단지)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의정부시에 위치해 있는 임대주택으로 당첨 시 의정부시로 전입하여야 하며 향후 서울시 내 임대주택 지원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평면유형에 따라 방 개수 및 세대구조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들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제거, 낮게 설치된 전등 스위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1~3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주택 중 서초포레스타 2단지 212동은 해당 동이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2층까지, 세곡지구 내 세곡리엔파크4단지는 해당 단지가 전체 주거약자주택으로 1~13층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구분 중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길 희망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청약시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단지별·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 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위치는 **14. 단지별 상세주소 안내(공고문 49~52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별 임대조건(상호전환)관련 상세 정보는 **공고문 16~21쪽 임대금액 전환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금액 전환안내

자치구	연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강남구	1	세곡2지구 3단지 ·레미안포레	49	54,800	384,200	(+)	96,100	153,600
						(-)	21,920	452,700
	2	세곡2지구 4단지 ·강남한양수자인	49	56,420	394,100	(+)	98,770	157,600
						(-)	22,560	464,600
			59	66,560	443,200	(+)	114,200	177,200
						(-)	26,620	526,400

자치구	연 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강남구	3	세곡2지구 6단지 ·강남한신희플러스 6단지	39	41,590	303,000	(+)	74,150	121,200
						(-)	16,630	355,000
			49	63,910	407,400	(+)	107,700	162,900
						(-)	25,560	487,200
	4	세곡2지구8단지 ·강남한신희플러스 8단지	59	98,440	514,700	(+)	153,760	205,800
						(-)	39,370	637,700
	5	세곡지구 ·강남신동아파밀리에 1,2단지 ·세곡리엔파크3,4단지 ·강남데시앙파크	39	30,890 32,820	261,900 277,900	(+)	59,040 ~ 62,690	104,700 ~ 111,100
						(-)	12,350 ~ 13,120	300,500 ~ 318,900
			49	46,140 49,800	342,000 367,900	(+)	82,890 ~ 89,330	136,800 ~ 147,100
						(-)	18,450 ~ 19,920	399,600 ~ 430,100
			59	54,680 59,590	387,500 406,900	(+)	96,320 ~ 102,930	155,000 ~ 162,700
						(-)	21,870 ~ 23,830	455,800 ~ 478,800
강동구	6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리버파크 1~10단지	39	30,520	237,400	(+)	56,040	94,900
						(-)	12,200	275,500
			49	41,570	275,600	(+)	71,190	110,200
						(-)	16,620	327,500
			59	49,800 64,150	321,200 370,100	(+)	84,330 ~ 103,920	128,400 ~ 148,000
						(-)	19,920 ~ 25,660	383,400 ~ 450,200
	7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 1~3단지	49	43,810 44,420	313,600 324,000	(+)	77,780 ~ 78,820	125,400 ~ 129,600
						(-)	17,520 ~ 17,760	368,700 ~ 378,700
			59	51,570 52,380	355,300 363,800	(+)	90,560 ~ 90,840	142,100 ~ 145,500
						(-)	20,620 ~ 20,950	420,700 ~ 428,200
	8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 4,6,7,8단지	29	18,500 19,210	182,200 190,600	(+)	38,090 ~ 39,680	72,800 ~ 76,200
						(-)	7,400 ~ 7,680	205,300 ~ 214,600
			39	35,890 37,050	251,500 264,100	(+)	63,050 ~ 65,430	100,600 ~ 105,600
						(-)	14,350 ~ 14,820	296,500 ~ 310,400
			49	54,420 54,620	330,100 333,100	(+)	90,100 ~ 90,310	132,000 ~ 133,200
						(-)	21,760 ~ 21,840	398,300 ~ 401,100
	9	고덕강일3지구 ·강동리엔파크 9,14단지	29	18,470 20,610	180,000 202,400	(+)	37,810 ~ 42,370	72,000 ~ 80,900
						(-)	7,380 ~ 8,240	203,100 ~ 228,100
			39	35,570 39,350	249,700 273,100	(+)	62,410 ~ 68,700	99,800 ~ 109,200
						(-)	14,220 ~ 15,740	294,100 ~ 322,200
			49	54,310	328,700	(+)	89,640	131,400
						(-)	21,720	396,500

자치구	연 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강동구	10	고덕강일지구 13단지	39	37,490	265,800	(+)	66,050	106,300
						(-)	14,990	312,600
			49	54,880	333,500	(+)	90,710	133,400
						(-)	21,950	402,100
	11	고덕온빛채	49	60,280	385,600	(+)	101,720	154,200
						(-)	24,110	460,900
강서구	12	마곡지구 ·마곡엠밸리1~15단지 (9단지 제외)	49	55,640 64,670	379,800 420,600	(+)	96,860 ~ 109,870	151,900 ~ 168,200
						(-)	22,250 ~ 25,860	449,800 ~ 501,400
			59	57,700 75,250	376,400 464,500	(+)	101,110 ~ 125,030	150,500 ~ 185,800
						(-)	23,080 ~ 30,100	457,500 ~ 558,400
	13	마곡지구 9단지 ·마곡엠밸리 9단지	49	57,990	319,300	(+)	92,300	127,700
						(-)	23,190	391,800
	14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 1~7단지	59	40,020 43,230	293,200 321,700	(+)	71,540 ~ 77,810	117,200 ~ 128,600
						(-)	16,000 ~ 17,290	343,200 ~ 375,700
구로구	15	천왕지구 ·천왕이펜하우스 1~6단지	39	28,750 35,480	249,700 287,100	(+)	55,590 ~ 66,330	99,800 ~ 114,800
						(-)	11,500 ~ 14,190	285,600 ~ 331,400
			49	43,710 49,120	325,400 349,800	(+)	78,680 ~ 85,850	130,100 ~ 139,900
						(-)	17,480 ~ 19,640	380,000 ~ 409,800
			59	51,900 59,930	366,600 394,100	(+)	91,570 ~ 102,280	146,600 ~ 157,600
						(-)	20,760 ~ 23,970	431,800 ~ 469,000
	16	천왕2지구 ·천왕연지타운1,2단지	39	41,540	293,000	(+)	73,020	117,200
						(-)	16,610	344,900
			49	54,390 61,900	346,500 372,700	(+)	91,620 ~ 101,960	138,600 ~ 149,000
						(-)	21,750 ~ 24,760	414,500 ~ 450,000
			59	65,140 76,450	395,800 446,700	(+)	107,670 ~ 124,460	158,300 ~ 178,600
						(-)	26,050 ~ 30,580	477,200 ~ 542,200
	17	항동지구 ·항동하버라인 2,3,4,8단지	39	34,430 37,890	253,700 270,100	(+)	61,700 ~ 66,920	101,400 ~ 108,000
						(-)	13,770 ~ 15,150	296,700 ~ 317,400
			49	51,650 58,370	322,500 351,700	(+)	86,300 ~ 96,170	129,000 ~ 140,600
						(-)	20,660 ~ 23,340	387,000 ~ 424,600
			59	59,740 66,440	377,900 397,600	(+)	100,360 ~ 109,060	151,100 ~ 159,000
						(-)	23,890 ~ 26,570	452,500 ~ 480,400

자치구	연 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노원구	18	상계보금자리지구 ·중계센트럴파크	49	63,850	377,200	(+)	104,390	150,800
						(-)	25,540	457,000
	19	상계장암지구(3,4단지) ·수락리버시티3,4단지	39	29,680	232,100	(+)	54,620	92,800
						(-)	11,870	269,200
마포구	20	상암2지구 ·상암월드컵파크 9~12단지	39	32,200	256,500	(+)	59,760	102,600
						(-)	12,880	296,700
			49	47,400 54,340	328,300 337,800	(+)	82,680 ~ 90,640	131,300 ~ 135,100
						(-)	18,960 ~ 21,730	387,500 ~ 405,700
			59	57,020 65,090	378,100 386,000	(+)	97,650 ~ 106,570	151,200 ~ 154,400
						(-)	22,800 ~ 26,030	449,300 ~ 467,300
서초구	21	내곡지구 ·서초포레스타 2,6단지	39	35,060	301,600	(+)	67,470	120,600
						(-)	14,020	345,400
			49	53,090 66,240	391,900 426,100	(+)	95,210 ~ 112,030	156,700 ~ 170,400
						(-)	21,230 ~ 26,490	458,200 ~ 508,900
	22	우면2지구 다세대 ·네이처힐가든	46	64,600	381,800	(+)	105,630	152,700
						(-)	25,840	462,500
	23	우면2지구 ·서초네이처힐 2~7단지	39	30,700 41,490	254,700 279,400	(+)	58,080 ~ 71,520	101,800 ~ 111,700
						(-)	12,280 ~ 16,590	293,000 ~ 331,200
			49	44,120 52,600	311,700 352,400	(+)	77,630 ~ 90,480	124,600 ~ 140,900
						(-)	17,640 ~ 21,040	366,800 ~ 418,100
			59	52,450 72,610	353,900 405,400	(+)	90,490 ~ 116,180	141,500 ~ 162,100
						(-)	20,980 ~ 29,040	419,400 ~ 496,100
성동구	24	마장동 임대아파트 ·마장동 에스에이치빌	39	20,880	267,000	(+)	49,570	106,800
						(-)	8,350	293,100
			49	32,660	329,000	(+)	68,010	131,600
						(-)	13,060	369,800
성북구	25	장월1 ·장월1에스에이치빌 1단지	39	14,490	218,300	(+)	37,950	87,300
						(-)	5,790	236,400
송파구	26	마천지구 ·송파파크테일1,2단지	39	30,790 31,710	248,800 255,000	(+)	57,530 ~ 59,110	99,500 ~ 102,000
						(-)	12,310 ~ 12,680	287,300 ~ 294,600
			49	45,160 46,360	319,700 326,600	(+)	79,530 ~ 81,460	127,800 ~ 130,600
						(-)	18,060 ~ 18,540	376,100 ~ 384,500
			59	53,650 55,760	361,200 375,000	(+)	92,470 ~ 96,050	144,400 ~ 150,000
						(-)	21,460 ~ 22,300	428,200 ~ 444,700

자치구	연 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송파구	27	오금지구 · 송파레미니스 1,2단지	39	38,570	246,500	(+)	65,130 ~ 66,080	98,600 ~ 102,300
				38,650	255,900	(-)	15,420 ~ 15,460	294,800 ~ 304,100
			49	58,090	325,700	(+)	93,100	130,200
						(-)	23,230	398,300
			59	71,520	398,300	(+)	114,320	159,300
						(-)	28,600	487,700
	28	위례포레샤인 13단지	39	42,580	271,900	(+)	71,800	108,700
						(-)	17,030	325,100
			59	75,350	403,000	(+)	118,650	161,200
						(-)	30,140	497,100
	29	위례포레샤인 23단지	39	42,610	260,700	(+)	70,630	104,200
						(-)	17,040	313,900
			49	63,670	332,500	(+)	99,400	133,000
						(-)	25,460	412,100
	30	장지지구 · 송파파인타운 2~11단지	39	28,600	240,500	(+)	54,440 ~ 56,020	96,200 ~ 98,200
				29,610	245,700	(-)	11,440 ~ 11,840	276,200 ~ 282,700
			49	39,070	276,000	(+)	68,720 ~ 79,650	110,400 ~ 121,000
				47,150	302,500	(-)	15,620 ~ 18,860	324,800 ~ 361,400
			59	49,580	335,000	(+)	85,580 ~ 100,770	134,000 ~ 147,700
				61,070	369,400	(-)	19,830 ~ 24,420	396,900 ~ 445,700
양천구	31	신정3지구 · 신정이펜하우스 1~5단지	49	40,070	303,800	(+)	72,720 ~ 87,570	121,500 ~ 140,300
				49,870	350,800	(-)	16,020 ~ 19,940	353,900 ~ 413,100
			59	47,150	344,000	(+)	84,550 ~ 100,990	137,600 ~ 157,600
				58,640	394,100	(-)	18,860 ~ 23,450	403,500 ~ 467,400
	32	신정4지구 · 신정숲속마을	39	28,320	236,600	(+)	53,750	94,600
						(-)	11,320	272,000
은평구	33	은평1지구 · 상림마을6-1~ 상림마을8-3단지	39	29,840	219,000	(+)	53,370	87,600
						(-)	11,930	256,300
			49	45,920	275,300	(+)	75,500	110,100
						(-)	18,360	332,700
			59	62,060	376,500	(+)	102,510 ~ 129,020	150,600 ~ 182,900
				79,880	457,300	(-)	24,820 ~ 31,950	454,000 ~ 557,100

자치구	연 번	지구 및 단지	신청 유형 (㎡)	기준 임대 조건		전환 구분	최대 전환 시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은평구	34	은평2지구 ·박석고개 1-1,1-3단지 ·마고정 3-1~3-3단지 ·우물골 2-1,2-2단지	39	29,140	220,300	(+)	53,480 ~ 53,710	88,100 ~ 90,500
				30,040	226,400	(-)	11,650 ~ 12,010	257,800 ~ 262,800
			49	44,840	276,800	(+)	75,930 ~ 77,040	110,700 ~ 119,800
				46,190	299,600	(-)	17,930 ~ 18,470	334,500 ~ 355,600
			59	57,960	370,300	(+)	97,750 ~ 114,320	148,100 ~ 167,400
				69,350	418,500	(-)	23,180 ~ 27,740	442,700 ~ 505,100
	35	은평3지구 ·구파발9-1단지 ·구파발10-2단지 ·구파발10-3단지	39	30,930	222,700	(+)	54,870 ~ 58,900	89,000 ~ 99,300
				32,220	248,300	(-)	12,370 ~ 12,880	261,300 ~ 288,500
			49	47,430	319,200	(+)	81,740	127,600
						(-)	18,970	378,400
			59	56,190	360,300	(+)	94,910 ~ 102,010	144,100 ~ 151,200
				61,390	378,000	(-)	22,470 ~ 24,550	430,500 ~ 454,700
중랑구	36	신내데시앙	59	50,800	326,500	(+)	85,880	130,600
						(-)	20,320	390,000
	37	신내3지구 ·신내우디안1단지 ·신내데시앙포레	49	48,590	336,300	(+)	84,730 ~ 87,080	134,500 ~ 140,000
				49,440	350,200	(-)	19,430 ~ 19,770	397,000 ~ 412,000
			59	58,540	386,900	(+)	100,120 ~ 101,770	154,700 ~ 159,700
				58,860	399,300	(-)	23,410 ~ 23,540	460,000 ~ 472,800
의정부시	38	상계장암지구(1,2단지) ·수락리버시티1,2단지	39	27,180	212,400	(+)	50,010	84,900
						(-)	10,870	246,300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관할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위 전환 이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의 임대조건 이율에 따라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자격

가. 공통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상계장암지구 1,2단지는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가능하며, 상계 장암지구 3,4단지는 서울특별시 외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가능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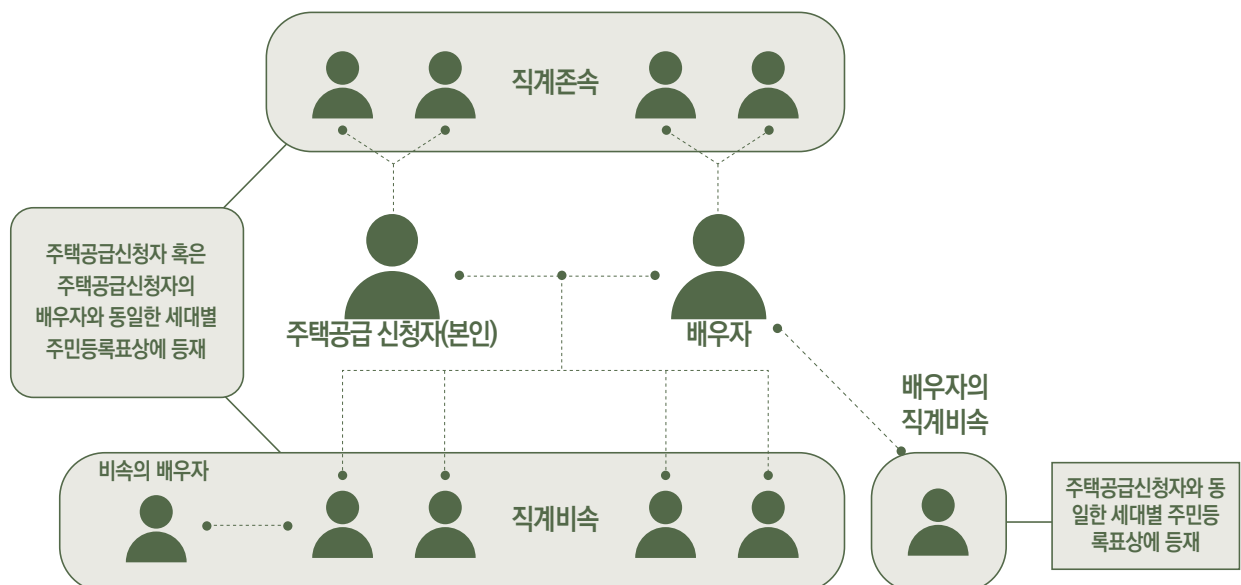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단, ①또는②의 자녀 및 형제자매의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 신청자의 직계비속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공고일기준 주민등록표상 해외체류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유의사항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임대주택 거주 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가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2018.12.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본 공고문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 상실 시 (무주택, 서울시 거주, 소득 및 자산 요건 등)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2026년 11월 소득이 조회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6년 8월 소득이 아닌 조회된 2026년 11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판단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기준

- 50㎡이하 국민임대주택(29㎡형, 39㎡형, 46㎡형, 49㎡형)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위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 50㎡이상 60㎡이하 국민임대주택(59㎡형)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소득기준 가산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 20%p 가산
 - 2인 가구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소득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참고]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가구원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50%	60%	70%	80%	90%
1인	1,906,682	2,288,018	2,669,354	3,050,690	3,432,027
2인	2,933,135	3,519,762	4,106,389	4,693,016	5,279,643
3인	4,084,215	4,901,057	5,717,900	6,534,743	7,351,586
4인	4,401,101	5,281,321	6,161,541	7,041,762	7,921,982
5인	4,663,493	5,596,191	6,528,890	7,461,588	8,394,287
6인	4,953,132	5,943,758	6,934,384	7,925,010	8,915,637
참고사항	※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태아(수)는 가구원수에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표의 금액은 가산 전의 금액이므로 신청자 본인의 가산기준에 맞는 금액을 따로 산정하여야 함 ※ 전용면적별 가구원수 및 가산항목에 따른 소득요건은 공고문 26~31쪽 을 참조 바람 ※ 소득항목별 세부 조사항목은 공고문 [별표2] 참고				

■ 자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단위: 만원)

구분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기본	34,500	4,542
10%p 가산	37,900	4,996
20%p 가산	41,300	5,451

※ 자산기준 가산요건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의 유무에 따른 가산항목 및 비율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1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
-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만 있는 경우 자산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5. 입주자 선정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영업일(2026.08.21.)부터 발급 가능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6.08.20.) 전일까지 종전 청약통장(청약저축, 예·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완료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신청 및 순위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 합산실적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조회된 내역으로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를 발급 받아 금회 공고 인정 여부 및 인정실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이후 전환 시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제한되어 서류심사 시 결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 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 2026-000379

가. 일반공급(일반)

구분	입주자 선정방법						
전용면적 50㎡ 미만 (29㎡, 39㎡, 46㎡, 4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1-1.선순위(월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669,354	3,519,762	4,084,215	4,401,101	4,663,493	4,953,132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4,106,389	4,901,057	5,281,321	5,596,191	5,943,758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1-2. 후순위(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소득기준
※ 선순위 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432,027	4,693,016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5,279,643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지구 및 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 세곡2지구 3단지, 세곡2지구 4단지, 세곡2지구 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고덕강일지구13단지, 고덕온빛채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상계장암지구 3,4단지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 상계장암지구 3,4단지는 의정부시도 신청가능
• 내곡지구, 우면2지구 다세대(네이처힐가든), 우면2지구(서초네이처힐)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 마장동 임대아파트	: [성동구], 강남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
• 장월1	: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랑구
• 마천지구, 오금지구, 위례포레샤인13단지, 위례포레샤인23단지, 장지지구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신정4지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은평1·2·3지구	: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 상계장암지구(1,2단지)	: [노원구, 의정부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②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 60㎡미만 (5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432,027	4,693,016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5,279,643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 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신청자 중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자녀수가 같거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6.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 일반공급(일반)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비고
전용면적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이하)	→	거주지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자녀 수가 많은 순) → 배점 합산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이하)	→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사람 (자녀 수가 많은 순) → 배점 합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

나. 일반공급(주거약자)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공통 신청자격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1961.08.20.이전 출생, 당일포함)] ②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⑦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①~⑦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공급신청자 본인)만 신청 가능																												
전용면적 50㎡미만 (29㎡, 39㎡, 4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1-1. 선순위(월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기준 <table><tr><th>가구원수</th><th>1인가구 (+20%p)</th><th>2인가구 (+10%p)</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r><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td><td>2,669,354</td><td>3,519,762</td><td>4,084,215</td><td>4,401,101</td><td>4,663,493</td><td>4,953,132</td></tr><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td><td>-</td><td>4,106,389</td><td>4,901,057</td><td>5,281,321</td><td>5,596,191</td><td>5,943,758</td></tr><tr><td>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td><td>-</td><td>-</td><td>5,717,900</td><td>6,161,541</td><td>6,528,890</td><td>6,934,384</td></tr></table>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669,354	3,519,762	4,084,215	4,401,101	4,663,493	4,953,132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4,106,389	4,901,057	5,281,321	5,596,191	5,943,758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2,669,354	3,519,762	4,084,215	4,401,101	4,663,493	4,953,132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6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4,106,389	4,901,057	5,281,321	5,596,191	5,943,758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1-2. 후순위(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 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432,027	4,693,016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5,279,643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 ② 2순위 : 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공고문 31~32쪽)에 의함						
• 세곡2지구 3단지, 세곡2지구 4단지, 세곡2지구 6단지, 세곡지구 : [강남구],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2지구, 고덕강일2·3지구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마곡지구, 마곡지구9단지 :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 천왕지구, 천왕2지구, 향동지구 :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 중계센트럴파크 :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종량구						
• 상암2지구 : [마포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 내곡지구 :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 마천지구, 오금지구, 위례포레샤인13단지, 위례포레샤인23단지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 신정3지구, 신정4지구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 신내3지구 : [종량구], 광진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전용면적 50㎡이상 (59㎡)	1.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가산)						
	가구원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3,432,027	4,693,016	5,717,900	6,161,541	6,528,890	6,934,384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태아 포함)	-	5,279,643	6,534,743	7,041,762	7,461,588	7,925,01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90%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또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023년 3월 28일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	7,351,586	7,921,982	8,394,287	8,915,637
2.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3.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은 “6.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 일반공급(주거약자)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비고	
	전용면적 50㎡미만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이하)			→ 거주지 순위 →	배점 합산	배점이 동일할 경우 전산추첨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이하)			→ 주택청약 종합저축 순위 →	배점 합산	

6.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가점기준(주거약자용 주택 제외)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기 준)출생 연월일		
	1976.08.20. (당일포함) 이전	1976.08.21.(당일포함) ~1986.08.20.(당일포함)	1986.08.21.(당일포함) ~1996.08.20.(당일포함)
② 부양가족수(태아 포함, 신청자 제외) ※ 공고문 34쪽 부양가족 설명 참조	3인이상	2인	1인
③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기 준)서울시 최종전입일		
	2021.08.20. (당일포함) 이전	2021.08.21.(당일포함) ~2023.08.20.(당일포함)	2023.08.21.(당일포함) ~2025.08.20.(당일포함)
④ 만65세 이상[1961.08.20.이전 출생(당일포함)]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노부모)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⑤ 미성년자녀(태아수 포함)의 수 [만19세 미만, 2007.08.21. 당일포함 이후 출생]	3자녀이상	2자녀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회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 인정회차)	60회 이상	48회이상 60회미만	36회이상 48회미만
⑦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⑧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점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 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 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⑨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사람 : 3점 (세부내용은 공고문 35쪽의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⑩ 감점 산정기준 : 2011.11.04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계약한 사람에 해당함.			
감 점 기 준			감 점 점 수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 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갱신계약은 제외)			
※ 단, “①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②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①+②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가구원수가 감소된 경우에는 작은 면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인정)			

*** 가점 항목 기재 요령**

(중요) 신청자는 신청서에 아래 항목을 직접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직접 기재한 사항에 의거하여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세대수의 200% 내외를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사실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경우, 서류심사대상자 또는 당첨자가 되더라도 추후 검증을 통해 가점 차감 또는 결격 처리되거나 당첨이 취소되며, 사실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에는 유리하게 변경해드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전 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표 초본 상 전입일 및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말소 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상계장암지구 1,2단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은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까지 모두 서울시로 보아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으로 점수 인정하며, 상계장암지구 3,4단지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산정함

○ 부양가족

※ 신청인(본인)은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제외한 자격검증대상)전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② 신청자의 형제 ·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 단, 만19세 미만[2007.08.21.이후 출생(당일포함)] 또는 만60세 이상[1966.08.20.이전 출생(당일포함)]인 사람에 한함.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는 태아

-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 산정하되, 이 ·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미성년자녀로 인정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 또는 모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의 손자녀는 미성년자녀로 인정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여부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해야 하며,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피부양자의 분리배우자'도 주택소유 조회 대상이므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함.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확인 : ①중소기업확인서상 주업종, ②사업자등록증상 업태, ③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목적에 '제조업' 기재 여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아래 항목 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에 해당]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
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등록 된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단, 보훈청에서
수권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1~4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동일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자에 한함,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하는 사람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계약자 본인만 해당)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유의사항

임신 중인 자녀(입양포함)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로 인정받아 당첨(예비자포함)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인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입증자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상기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7. 신청접수 일정

■ 청약신청 세부일정

대상자	접수일정	접수방법
○ 공급(일반, 주거약자) <u>선순위</u> 자격대상자	2026.08.31.(월) 10:00 ~ 2026.09.03.(목) 17:00	인터넷청약 : www.i-sh.co.kr/ app
- 50㎡미만(29㎡, 39㎡, 46㎡,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 50㎡이상 60㎡이하(5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026.09.01.(화) ~ 09.03.(목) 10:00 ~ 17:00	방문청약 : 서울주택도시개발 공사 2층 대강당
○ 공급(일반, 주거약자) <u>후순위</u>	2026.09.16.(수) 10:00 ~ 17:00	인터넷청약 : www.i-sh.co.kr/ app
- 50㎡미만(29㎡, 39㎡, 46㎡, 4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 50㎡이상 60㎡이하(59㎡)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미가입자 포함) (※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순위별 최종 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 청약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8. 신청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안내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10분에 OK!”, “24시간 가능한 인터넷 청약” - 각 순위별 최종청약일 마감시간(17:00)까지만 운영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은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청약 신청을 위해 사전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11종) 중 1개를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본 청약 시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자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청약 시 간편인증서는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PASS, 삼성패스, 우리은행, 농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SOL), 토스,뱅크샐러드에서 발급받은 간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총11종)
- 공사가 이용 중인 실명인증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간편인증서(11종)로 실명인증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선순위 : 2026.08.31.(월) 10:00 ~ 2026.09.03.(목) 17:00
- 후순위 : 2026.09.16.(수) 10:00 ~ 17:00

※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9월 16일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 신청가능단지는 후순위 청약접수일 오전 9시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청약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 공고선택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인터넷 청약 유의사항

-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완료 후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작성 내용은 절대 변경 불가능하므로, 최종확인 완료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도 변경 불가)

방문청약 안내

○ 이번 입주자 모집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방문접수를 진행합니다. 방문접수 시 신청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몰릴 경우 장시간(5시간 이상)의 대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접수를 활용하여 주시고 방문접수 시 대기시간을 고려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격

[선순위 조건]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 (1인 70%, 2인 60% 이하)
-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주택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사람(1인 90%, 2인 80% 이하)으로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기간 : 2026.09.01.(화) ~ 2026.09.03.(목) 10:00 ~ 17:00

2026.09.01.(화) : [강동구, 송파구 내 단지]

2026.09.02.(수) :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내 단지]

2026.09.03.(목) :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의정부시 내 단지]

반드시 신청 단지의 방문청약 접수일을 확인하여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2)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 방문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는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하여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대행하는 접수 방식이며, 청약 신청인원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청약과 관련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어 가점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가져오시면 원활한 방문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도로명 주소, 서울시 최종 전입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 및 납입회차(가입 은행에서 순위확인서 발급 통해 확인 가능)등을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제외)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서울시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 상 서울시에 최종전입한 날짜로 확인. 주민등록초본 지참 시 확인 가능
 - **주택청약저축 납입회차** :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순위(가입)확인서 발급하여 납입인정회차 확인가능
- 신청 접수 후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지·주택형·가점사항 등 본인이 기재한 내역에 대해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장내 혼잡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자 외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대기시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하신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 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확인**은 공사에서 일괄 조회하므로 **순위확인서 제출 불요**
- 인터넷·모바일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 또는 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 -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가능)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PC로 청약한 건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을 PC로 취소 후 다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신청자가 잘못 입력 또는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청자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라며, 청약 신청에 필요한 신청자격, 청약은행, 청약인정횟수, 신청순위, 월평균소득, 배점세부항목 등을 해당 서류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1)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u>2012. 1. 4.</u>	2012. 1. 5.	<u>서울시</u>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서울시 강서구 B오피스텔
2015. 12. 14.	2015. 12. 17.	서울시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같은 서울시 내에서 다른 자치구로 2014년 7월 25일, 2015년 12월 14일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예시1-2) 착오기재가 다수 발생한 *서울시 최종전입일 산정 방식

전입일	변동일	등초본상 거주지
2012. 1. 4.	2012. 1. 5.	서울시 구로구 A아파트
2014. 7. 25.	2014. 7. 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u>2015. 12. 14.</u>	2015. 12. 17.	<u>서울시</u> 강남구 C빌라

- 2012년 1월 4일 서울시로 전입 후 서울시 외 지역으로 2014년 7월 25일 전입하였다가 2015년 12월 14일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자치구 상관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시 최종전입일은 **2015년 12월 14일**입니다. (단, 등초본상 전입일, 변동일 중 빠른 날짜부터 인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표 초본 상 전입일 및 변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또는 전출한 경우 재등록, 재전입일부터 기산합니다.

9.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안내

-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을 기준으로 모집세대수의 **상위 200%**에 해당하는 신청인을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심사서류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20.)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 ·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될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6.10.12.(월) 16: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6.10.21.(수) ~ 2026.10.23.(금)

- 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연락 없이 결격 처리하므로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심사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SMS 미확인 또는 통신사 장애로 인해 SMS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일정에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SMS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심사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제출[2026.10.23.(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택배,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주소

- (06336)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국민임대주택 담당자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20.)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서류심사대상자 선정비율

- 기본기준 : 모집세대수의 200% 내외
※ 커트라인 내에 동점자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서류심사대상자를 선정함

10. 심사서류 제출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8.20.)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기존 발급분 제출가능)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셨더라도 등기로 공통서류를 포함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결격'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밝혀질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공급신청자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특정X, 일반X, <u>상세만</u> 인정) •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표기 되도록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도 함께 제출(발급방법 동일)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동의란(2곳) 모두 성명을 정자로 작성(사인, 도장 불가)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①만65세 이상 노부모부양 가점, ②사회취약계층 가점 중 “노부모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신청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닌 <u>피부양자의 배우자도</u>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동의(서명) 받아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인증서 로 동의 시 원본미제출 가능하나 스캔으로 올릴 시 반드시 원본제출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대상자만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임신진단서	- 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된 원본에 한하며,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임신 주수 및 태아 수 기재)에 한하며, 임신확인서 및 진료내역 확인서는 제출 불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또는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배우자가 명기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예비가구 구성확인서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로 당첨 이후 세대 분리예정인 신청자	서울주택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우편발송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주 거 약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부 각 보훈지청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총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가점대상자 준비서류(해당자만 제출)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①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한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자(노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행정복지센터
② 중소기업업체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제조업체가입분)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 시 접수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해당 직장 • 중소기업벤처기업부 (☎1357)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http://sminfo.mss.go.kr) • 등기소
③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		
- 가.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제출서류 없음 (공사에서 관할 보훈지청으로 직접 의뢰하여 가점가능여부 공문확인 예정)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 정통지서 사본	성평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홈페이지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구청 • 정부24 홈페이지 • 북한이탈주민포털 (hanaportal.unikorea.go.kr)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공고일 이전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추천서(자치구 확인) -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의 장 - 해당 구청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권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복지대상 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u>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u>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시장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당증빙서류	해당 기관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⑥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등 <u>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책정기간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⑦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계약자에 한함)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면 사본	
⑧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 · 보호보상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 경 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가점대상 확인서류제출 기간 이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여 부확인을 위하여 자산소명 기간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일부 서류의 경우 발급 과정에서 여러 날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동호추첨 및 당첨자발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며, 지구단위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또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 재공급 단지는 **3. 공급대상**에 기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선발인원은 공고일 이후 입주자 퇴거 등 공가 상황 변동에 따라 명시된 인원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약 2개월 주기의 예비당첨자 발표를 통해 공급합니다.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 자격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당첨자 계약률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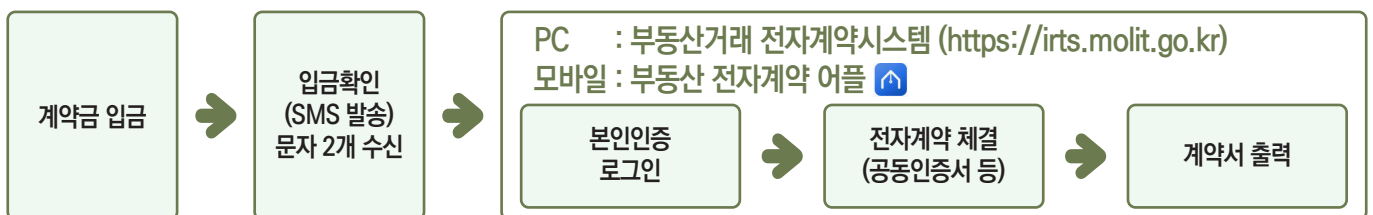
- **당첨자발표 : 2027.02.15.(월) 16: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 당첨자 발표 개시 전 조회 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반드시 당첨자 발표 이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대상자'로 조회 시 조회되지 않음)
 - ※ 당첨자 발표의 경우 홈페이지와 SMS(미당첨의 경우 발송하지 않음)로 발표하므로, SMS 미확인 또는 통신사 장애로 인해 SMS를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당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과정에서 서류미제출, 신청자격 결격, 감점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서류 등의 심사 없이 당첨자(예비자)로 발표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 시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관련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후 적합한 당첨자(예비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신청 시의 신청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또는 청약 신청 시 인적사항(주소·연락처 등)을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류제출 안내, 소명 관련 안내 및 계약 관련 안내 등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에는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후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공사에 즉시 통보하거나(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서 주소, 연락처를 직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첨자 발표 14일 전인 2027.02.01. 00:00까지 수정 가능)
인적사항 오기재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 또는 수정하지 아니하여 서류 미제출, 소명 미응답, 계약 체결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우리 공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연락처 변경 방법
☞ 홈페이지(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정보 - 청약신청관리 - (주택임대)주소·연락처 변경 및 청약 철회 신청 메뉴에서 변경(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필요)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합니다.

12. 계약일시 · 장소 및 구비서류

■ 계약일시

- 2027.03.03.(수) ~ 2027.03.05.(금)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온라인 전자계약 및 방문계약(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 ※ 온라인 및 방문계약 일정은 계약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

■ 온라인 전자계약 안내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정보가 전송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므로 입금 후 약 1시간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①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문자 및 ②한국부동산원의 전자계약서 구성완료 문자, 즉 2번의 문자 수신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종료 전, 공사로 내방하여 방문계약을 해야 합니다.

■ 방문계약 안내

- 방문 계약 장소에 계약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가정, 직장에서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계약 구비서류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 내방 시	대리인 내방 시(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도장(또는 서명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위임장(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① 계약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② 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위임장(공사 양식) ④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신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 처리됩니다.

13.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입주자자격요건(소득)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되거나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단, 소득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부터는 퇴거됨. 자동차의 경우 기준가액 초과 시 재계약이 불가함)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 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 됩니다.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tr><tr><td>10%이하</td><td>100%</td><td>11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10%</td><td>120%</td></tr><tr><td>30%초과 50%이하</td><td>120%</td><td>140%</td></tr></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동차가액을 제외한 자산기준 초과</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d colspan="2">140%</td></tr><tr><td colspan="3">*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이며, 자동차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 불가함</td></tr></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동차가액을 제외한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이며, 자동차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 불가함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동차가액을 제외한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이며, 자동차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 불가함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거주기간 중에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는 소득 및 자산기준(자동차가액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유지조건을 회피할 의도로 해당 주택에 실제 입주한 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신청자격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①1주택을 인터넷과 방문 등으로 중복신청하거나 ②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③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 인터넷 청약과 방문 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임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방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이후 기재한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은 불가합니다.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자세하게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착오작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연락처 및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변경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당첨 및 계약취소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부동산 및 차량소유, 소득입증, 가점관련 서류, 심사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 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거주,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발표 이전에 분양권 등의 소유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태아를 부양가족, 미성년자로 인정받아 당첨자(예비자)가 된 자가 입주 시 출산(또는 임신유지) 및 입양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인공임신중절수술 또는 입주 전 파양 등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심사기간 중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합격자 발표 후 당첨자(예비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 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당첨자 지위는 자동 삭제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발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당첨제외 또는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발표예정일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에도 전대 확인 시 퇴거 조치함)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 완납 및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따릅니다.

14. 단지별 상세주소 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여건상 견본주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공급되는 모든 단지에 대하여 **전자책**을 공개하오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정보’ 클릭 후 메뉴상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공가 공급단지에 대한 전자책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작된 것으로 이후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현장 주변여건을 확인하여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상세 주소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강남구	세곡2지구 3단지	레미안포레	강남구 밤고개로21길 25	개별난방
	세곡2지구 4단지	강남한양수자인	강남구 자곡로 260	
	세곡2지구 6단지	강남한신희플러스6단지	강남구 밤고개로26길 50	
	세곡2지구 8단지	강남한신희플러스8단지	강남구 밤고개로27길 20	
	세곡지구	강남신동아파밀리에1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00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0	
		세곡리엔파크3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11	
		세곡리엔파크4단지	강남구 현릉로590길 88	
		강남데시앙파크	강남구 현릉로590길 63	
강동구	강동권역 강일지구	강일리버파크1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25	지역난방
		강일리버파크2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68	
		강일리버파크3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0	
		강일리버파크4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19	
		강일리버파크5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	
		강일리버파크6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4길 19	
		강일리버파크7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8길 25	
		강일리버파크8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4길 72	
		강일리버파크9단지	강동구 고덕로97길 29	
		강일리버파크10단지	강동구 고덕로97길 20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1단지	강동구 상일로 152	지역난방
		고덕리엔파크2단지	강동구 고덕로 427	
		고덕리엔파크3단지	강동구 상일로 74	
	고덕강일2지구	강동리버스트4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110	지역난방
		강동리버스트6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7	
		강동리버스트7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가길 70	
		강동리버스트8단지	강동구 아리수로93나길 88	
	고덕강일3지구	강동리엔파크9단지	강동구 고덕로98길 29	지역난방
		강동리엔파크14단지	강동구 고덕로98길 160	
	고덕강일지구13단지	강동리엔파크13단지	강동구 고덕로98길 161	지역난방
	고덕온빛채	고덕 온빛채	강동구 아리수로 385	지역난방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강서구	마곡지구	마곡엠밸리1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31	지역난방
		마곡엠밸리2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46	
		마곡엠밸리3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32	
		마곡엠밸리4단지	강서구 마곡서로 175	
		마곡엠밸리5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11-11	
		마곡엠밸리6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100	
		마곡엠밸리7단지	강서구 마곡서로 133	
		마곡엠밸리8단지	강서구 마곡서1로 81	
		마곡엠밸리10단지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밸리11단지	강서구 공항대로 124	
		마곡엠밸리12단지	강서구 공항대로 140	
		마곡엠밸리14단지	강서구 마곡중앙로 33	
		마곡엠밸리15단지	강서구 마곡중앙로 36	
	마곡지구 9단지	마곡엠밸리9단지	강서구 공항대로 103	지역난방
	발산지구	마곡수명산파크1단지	강서구 강서로47길 108	지역난방
		마곡수명산파크2단지	강서구 강서로47길 158	
		마곡수명산파크3단지	강서구 수명로1길 110	
		마곡수명산파크4단지	강서구 수명로1길 16	
		마곡수명산파크5단지	강서구 수명로2길 105	
		마곡수명산파크6단지	강서구 수명로2길 63	
		마곡수명산파크7단지	강서구 수명로2가길 22	
구로구	천왕지구	천왕이펜하우스1단지	구로구 천왕로 91	개별난방
		천왕이펜하우스2단지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펜하우스3단지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4단지	구로구 천왕로 29	
		천왕이펜하우스5단지	구로구 천왕로 10	
		천왕이펜하우스6단지	구로구 천왕로 9	
	천왕2지구	천왕연지타운1단지	구로구 오류로 30	개별난방
		천왕연지타운2단지	구로구 오리로 1102-10	
	항동지구	항동하버라인2단지	구로구 연동로 234	개별난방
		항동하버라인3단지	구로구 항동로 43	
		항동하버라인4단지	구로구 항동로 72	
		항동하버라인8단지	구로구 서해안로 2036	
노원구	상계보금자리지구	중계센트럴파크	노원구 덕릉로70가길 21	지역난방
	상계장암지구 (3,4단지)	수락리버시티3단지	노원구 누원로 28	지역난방
		수락리버시티4단지	노원구 누원로 18	
마포구	상암2지구	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지역난방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6	
		상암월드컵파크 11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37	
		상암월드컵파크 12단지	마포구 월드컵북로 502-7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서초구	내곡지구	서초포레스타2단지	서초구 현릉로8길 45	개별난방
		서초포레스타6단지	서초구 청계산로9길 1-12	
	우면2지구 다세대	네이처힐가든	서초구 형촌길 60	개별난방
	우면2지구	서초네이처힐2단지	서초구 형촌길 15	개별난방
		서초네이처힐3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60	
		서초네이처힐4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65	
		서초네이처힐5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5	
		서초네이처힐6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30	
		서초네이처힐7단지	서초구 태봉로2길 10	
성동구	마장동 임대아파트	마장동 에스에이치빌	성동구 마조로15가길 23	개별난방
성북구	장월1	장월에스에이치빌1단지	성북구 한천로101길 54	개별난방
송파구	마천지구	송파파크데일1단지	송파구 성내천로37길 37	개별난방
		송파파크데일2단지	송파구 성내천로47길 38	
	오금지구	송파레미니스1단지	송파구 성내천로 6	개별난방
		송파레미니스2단지	송파구 동남로 341	
	위례포레샤인 13단지	위례포레샤인13단지	송파구 위례서이로 25	지역난방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위례포레샤인23단지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지역난방
	장지지구	송파파인타운2단지	송파구 충민로 151	개별난방
		송파파인타운4단지	송파구 새말로12길 16	
		송파파인타운5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5	
		송파파인타운6단지	송파구 충민로6길 14	
		송파파인타운7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19	
		송파파인타운8단지	송파구 충민로4길 6	
		송파파인타운9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17	
		송파파인타운10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20	
		송파파인타운11단지	송파구 송파대로8길 58	
양천구	신정3지구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99	지역난방
		신정이펜하우스2단지	양천구 신정이펜2로 55	
		신정이펜하우스3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	
		신정이펜하우스4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51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양천구 신정이펜1로 27	
	신정4지구	신정숲속마을	양천구 신정로 110	

자치구	지구명	단지명	소재지 주소(서울특별시)	난방방식
은평구	은평1지구	상림마을6-1	은평구 진관4로 78-7	지역난방
		상림마을6-2	은평구 진관4로 100	
		상림마을6-3	은평구 진관4로 107	
		상림마을6-4	은평구 진관4로 87	
		상림마을7-1	은평구 진관4로 78-8	
		상림마을7-2	은평구 진관4로 77	
		상림마을7-3	은평구 진관4로 47	
		상림마을7-4	은평구 진관4로 48-17	
		상림마을7-5	은평구 진관4로 48-8	
		상림마을8-1	은평구 진관4로 37	
		상림마을8-2	은평구 진관4로 17	
		상림마을8-3	은평구 진관3로 70	
	은평2지구	박석고개1-1	은평구 진관1로 21-9	지역난방
		박석고개1-3	은평구 진관1로 21-10	
		마고정3-1	은평구 진관1로 55	
		마고정3-2	은평구 진관2로 90	
		마고정3-3	은평구 진관2로 60	
		우물골2-1	은평구 진관2로 67	
		우물골2-2	은평구 진관2로 77	
	은평3지구	구파발9-1단지	은평구 진관3로 67	지역난방
		구파발10-2단지	은평구 진관3로 15-35	
		구파발10-3단지	은평구 북한산로 2	
종랑구	신내데시앙	신내데시앙	종랑구 용마산로 669	지역난방
	신내3지구	신내우디안1단지	종랑구 신내역로1길 85	개별난방
		신내데시앙포레	종랑구 신내역로 165	
의정부시	상계장암지구 (1,2단지)	수락리버시티1단지	의정부시 누원로 51	지역난방
		수락리버시티2단지	의정부시 누원로 52	

15. 단지별 유의사항

- 단지별 유의 사항(공통) -

해당 공고문의 입주자 유의사항은 중요사항만을 요약하여 안내하였으니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자책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제작된 것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지하철, 하천, 어린이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조성 계획(예정사항)은 각 공공시설의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책 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사업승인)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발코니 위치,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자책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세면기, 변기 위치, 창호 종류 및 위치, 등기구 종류, 벽체, 대피 공간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다양한 주거유형의 도입으로 단위세대 평형이 상하층 간에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발생하며, 동일 평형 중 발코니 면적 및 설치위치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 계획 보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와 단지의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 별 아트월 및 가구, 도배, 타일, 위생도기와 마감재의 경우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별 동일 타입이라도 평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마감재(문선, 문틀, 아트월, 몰딩)등 시공 구간에 시공 특성상 타카핀이 불규칙 및 과다하게 사용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설계 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랍니다.(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주출입구 차단기와 단지 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유아용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저층세대 및 인접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일부 동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 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피공간이나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홈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시공된 우·배수 겸용관이 시공 상의 오차 및 건축구조에 따라 일부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발코니 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 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외기 온도)차이로 인해 부득히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되도록 환기시설을 가동하여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에어컨 배관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내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 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된 경우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용 시스템 루버와 단차가 있어(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활하게 환기시키기 위해) 실외기 하부에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가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확장할 경우 임의변경으로 인한 구조적문제, 결로, 누수, 환기장비 흡입구 막힘 등의 문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기 세대분전반 및 통신 세대통합단자함은 신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면적은 확장 전(비확장형) 기준으로 확장형의 실 유효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세대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비상 대피공간이므로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피공간은 건축법상 긴급 상황으로부터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 및 시공되는 바, 단열재 미설치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 환기를 통하여 결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입주민은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그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트랜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합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 출입문은 동별, 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 출입구 형태가 동별로 상이하여 굴절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고저차 해소 및 녹지 공간 확보 등) 상황에 따라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어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 출입구(차량, 보행로), 어린이 놀이터, 지하층 및 1층 공동현관 출입구 (옥상출입구 포함), 텃밭,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무인 택배함, 쓰레기수거장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 취약 지역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에 설치된 CCTV 설비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변압기, 스위치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외관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가스배관이 불가피하게 복도 천장하부 및 창문하단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지붕 층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발코니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파트 외관미관 저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주차 대수는 법정주차대수에 맞게 설치하였으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외관, 단지명칭, 호수번호,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여건 및 현장여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수종(규격, 수량 등) 및 수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용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지구(또는 단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 환경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주변 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의 전기, 급수, 급탕, 난방, 가스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입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 고덕리엔파크3단지는 지상 주차장이 없고, 지하주차장 입구의 층고로 인하여 대형 SUV차량, 차량 상부 부착물 설치차량, 화물차량, 생계형차량(탑차), 소형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덕온빛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유의사항

[주변 여건]

- 단지 반경 1,000m 부근에 지하철 강일역, 상일동역이 있습니다.
- 단지 반경 500m 부근에 강일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단지 여건]

- 단지 내 설치된 지역편의시설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용가능한 시설입니다.
- 지역편의시설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5동과 206동 사이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고, 201동과 202동 사이에 경로당, 피트니스, 코인세탁소등이 위치하고 있고, 202동과 203동 사이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동 1층에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가, 사회적 기업 공간, 복합커뮤니티가 있습니다.
- 사회적 기업 공간은 지역 자치구와 협약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3등급을 예비인증받은 공동주택으로, 202동과 203동 사이에 이를 홍보하기 위한 제로에너지아파트 홍보관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 설명회 등이 개최될 수 있습니다.
- 202동과 203동 사이, 204동과 205동 사이, 205동과 206동 사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 인접한 세대는 소음, 사생활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동 지하층에는 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5동 지하층에는 기계실, 냉각탑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부분 일부 녹지공간으로 이삿짐 차량은 비상차량 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냉난방은 지열을 이용한 중앙냉난방 방식으로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에는 난방만 공급이 가능하고 실내 온도조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별도의 실외기실이 구획되지 않아 냉매를 이용한 냉방기(에어컨)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실, 복도, 지하주차장의 소화배관은 동결·동파 방지를 위해 전기 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절기 동안 열선사용에 따른 전기료 및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폐쇄되어 있으나 화재 시 개방됩니다.
- 각동 옥상 및 외벽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배선을 위한 케이블덕트시설이 옥상바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반사광으로 일시적 눈부심 현상 및 인버터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창호 주변에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태양광 발전설비와 외벽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창문 개폐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지표면 레벨차이로 인한 조경석 설치 등으로 인해 조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는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사다리차 사용시 외단열재 파손우려)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에 수직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는, 바닥타일면에 단차가 있습니다.
- 외기와 접하는 거실 및 발코니 PL창호는 3중유리 시스템창호로 설계되어 틸트앤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접하는 거실 및 발코니 PL창호 개폐방식은 안여닫이 방식입니다.
- PL창호는 블라인드 일체형 3중유리 시스템창호로 블라인드 보호유리-블라인드-3중유리 창호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라인드 조작 등 창호 사용방법은 입주시 제공되는 시설물 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외 온도차이가 크면 결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일부세대는 수거함과 거리가 다소 멀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입로는 상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진입 차로 1개소, 진출 차로 2개소를 계획하여, 방문 차량으로 인해 진입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출입문은 동별·세대별로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하여 각각 동 출입문 크기 및 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지하층 구조에 의한 동출입구 통로 형태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4동의 경우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2층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경우 203동과 204동 사이에 계획된 별도 엘리베이터 및 보행경사로를 통해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의 충고로 인하여 대형 SUV차량, 차량 상부 부착물 설치차량, 화물차량, 생계형차량(탑차), 소형버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차량통로높이 B1F : 2.7m / B2F : 2.3m)
- 비상차량 출입 시 도로 협소에 따른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 640대(지하), 근린생활시설 2대(지상)로 총 642대이며, 주차구획은 일반형, 경형 주차구획[2~2.6m × 3.6~6m] 419대, 여성우선주차[2.5m × 5.0m] 142대, 장애인용 주차구획[3.3m × 5.0m] 21대, 전기차구획[2.3m × 5.0m] 26대, 저공해주차구획[2.6m × 5.2m] 33대입니다.
- 주차장 중 일부는 승용차 공동 이용(나눔카) 서비스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층 아파트 주동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지하1층)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26대(급속충전1대+완속4대+이동식 21대) 설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에 따른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지열시스템)가 설치되어 냉난방 에너지로 이용되며, 지역난방으로 온수를 생산, 사용하게 되고 사용되는 지역난방 비용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물청소 및 세차 등을 할 경우 시설물 및 주차된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 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합니다. (B1F 바닥방수 없음)
- 출입구에 설치된 주차관제설비 위치는 단지 여건상 경비실과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한 부출입구, 단지내 보도는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에는 흡출기가 설치되어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 옆에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내부시설(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역편의시설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가동 시 인접부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최하층 승강기홀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제습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민은 제습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거실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ALC벽 전용 규격제품사용)
- 정수기, 비데, 인덕션 등 일부 가전제품 사용 시 순간전압강하 현상에 의해 세대 내 전등에 깜빡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전제품 구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에는 전기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스 쿡탑을 위한 별도 도시가스배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49타입에는 다기능 생활정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에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BES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지상파 TV(FM)공청 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202동 옥상옥탑 지붕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세대 내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조명기구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의 전기, 급수, 급탕, 난방계량은 원격 검침 방식입니다.
- 세대내 방범용 동체감지기는 각동 1,2층 및 최상층에만 설치됩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단지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지하층 및 1층 주출입구, 옥상출입구 등에 설치되어있으며 감시 취약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에 설치된 CCTV는 야간에 설치 위치 환경에 따라 화질이 주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소관사항으로, 입주 시 설치되지 않을 수 있어 휴대전화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시설물은 입주 후 입주자와 이동통신사간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함)
- 이동통신 서비스용 중계기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대표(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의 검토결과서에 따라 동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은 이동통신사에서 설치사항입니다.
- 일부 단위세대는 세탁기 설치를 위한 수전 등으로 인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가 있으며, 평면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 팸플릿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별 세대 내 옵션 설치 여부]

단지명	빌트인 가전 항목				
	팬코일유닛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비고
고덕온빛채	O	X	O	X	팬코일유닛:지열냉난방 시스템 열원 공급

2026.08.2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별표1〉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 등 신규 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분양권 등 매수한 경우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준공 후 등기처리 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 소유 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 회신 문서를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소명인정 불가하며, 당시 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된 적법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다면 소명이 불가)
-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 원(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별표2〉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 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호처 보호대상자명예수당, 보호처 보호대상자보상급여 등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 자산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 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임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임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소득, 자산 산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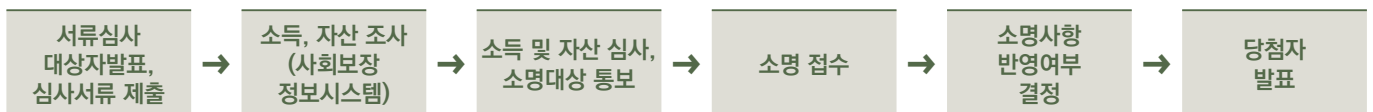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향후 별도로 안내되는 소명기간 내 미제출시 자격결격으로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인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이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부터 과거 3개월 간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 • 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 • 연금저축 :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구분	산정방법
기타(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불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이 외 개인 간 사채 인정불가)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자산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주택,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⑤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 이상 소득 중복	1개 사업장으로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함.

2026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6.10.12.(월)
16시 이후

최종 당첨자 발표

2027.02.15.(월)
16시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 - 3456